학교폭력조치결정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 고	□□□	피 고	○○고등학교장
판결선고일	[1심]2019. 8. 29. 원고패소	비 고	
사건개요	가. 원고는 인천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1반에 재학 중이던 2018. 4. 17. 11:40경 2학년 1반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인 ■■■이 원고가 벗어 놓은 교복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누구의 것인지를 물었다는 이유로 ■■■의 팔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이에 ■■■이 원고의 목을 뒤에서 조른 후 놓아 주자 ■■■의 배를 발로 차고, ■■■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려고 하다가 손톱으로 ■■■의 눈 밑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 나. ○○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8. 4. 25. 회의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원고와 그 보호자, ■■■과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의 행위는 싸움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16-99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4점(매우 높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4점(매우 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4점(없음), 화해 정도 2점(보통)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18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4. 27. 원고에게 전학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피고의 위 전학 조치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2018. 6. 7. 이 사건 행위가 전학 조치를 할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과 원고가 화해하였고, ■■■이 원고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원고가 과거에 학교폭력으로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일방 폭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과거에 교권침해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위 결정에 따라 2018. 6. 21.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심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고시에 따라 학교폭력의 심각성 3점(높음), 학교폭력의 지속성 1점(낮음), 학교폭력의 고의성 3점(높음),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2점(보통), 화해 정도 1점(높음)으로 판정하여 그 판정점수 합계 10점에 해당하는 조치로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의결하여 피고에게 그 조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2018. 6. 27.부터 2018. 6. 29.까지의 기간 3일 및 2018. 7. 12.부터 2018. 7. 20.까지의 기간 중 7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보호자(모 □□□)는 피고에게 원고의 시험일정 등을 고려하여 출석정지 일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2018. 7. 12.부터 2018. 7. 20.까지의 기간 중 7일 및 2018. 8. 6.부터 2018. 8. 8.까지의 기간 3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그 통지서가 2018. 6. 말경 내지 2018. 7. 초경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송달되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26. 원고에게 한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 절차상 위법 여부 - 의견진술 기회 미부여 주장 부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은자치위원회는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방어권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고 학교폭력의 인정 여부 및 조치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취지인데, 원고와 그 보호자는 2018. 4. 25.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의견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점(을 제1호증의 기재), 이 사건 위원회가 2018. 6. 21. 개최한 이 사건 회의는 인천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전학 조치에 대한 원고의 재심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그 결정 취지에 따른 조치를 다시 심의하기 위한 것인데, 당시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회의에서 재차 원고와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원회가 이 사건 회의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재차 부여하지 않은 것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조치 통지서 미송달 및 불복절차 미고지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였다가 원고의 보호자의 출석정지 일자 변경 요청에 따라 2018. 6. 26. 원고에게 출석정지 일자를 변경한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를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그 통지서가 2018. 6. 말경 내지 2018. 7. 초경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그 처분서인 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인 통지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 등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4호증의 기재), 원고가 실제로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고(을 제5호증의 기재), 그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불복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 실체상 위법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9가지의 조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기준으로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마다 그 정도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로 판정하고 그 점수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해학생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의하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